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4. 12. 09.(월)]

■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일원 울산다운 2지구 내 A-5블록 국민임대주택 701호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요 약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을 충족하는 '민법' 상 **성년인 자**

2.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 없음

3.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우대항목		최종 소득, 자산기준 (한도)		
가구 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원)	자동차가액(원)
1인	0인	3,134,668	345,000,000	37,080,000
2인	0인	4,332,570	345,000,000	37,080,000
	1인	4,874,141	380,000,000	40,790,000
3인	0인	5,039,054	345,000,000	37,080,000
	1인	5,758,919	380,000,000	40,790,000
	2인 이상	6,478,784	414,000,000	44,500,000

* 출생(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1)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가산
- 2)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가산
- 3)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일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3,482,964	3,831,260	4,179,557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5,415,712	5,957,283	6,498,854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7,198,649	7,918,514	8,638,379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8,248,467	9,073,314	9,898,16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8,775,071	9,652,578	10,530,085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9,563,282	10,519,610	11,475,938
7인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10,351,493	11,386,642	12,421,792
8인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11,139,704	12,253,674	13,367,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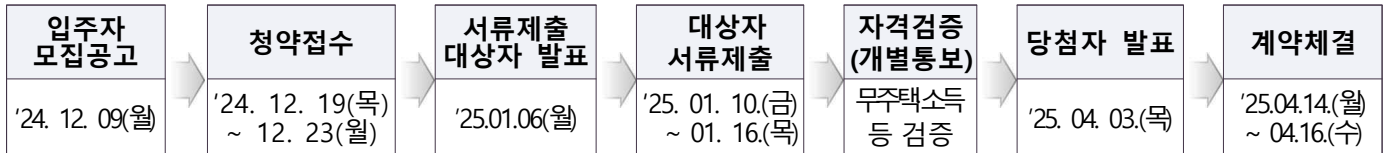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4-000724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회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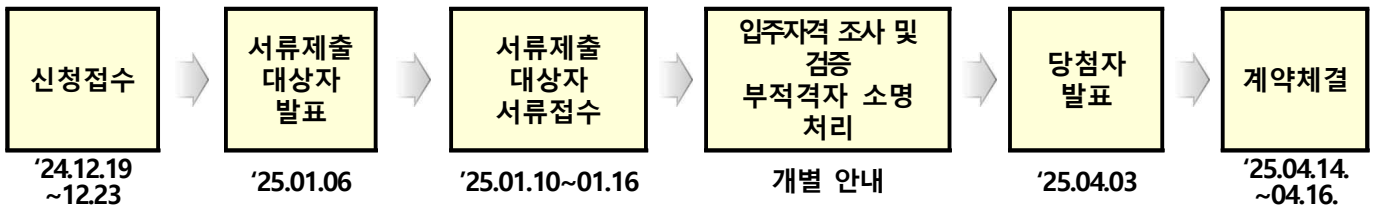
6. 기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2.0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2.09.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어플(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청약 마감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일정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임대조건

- ①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 ② 임대조건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①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전자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 ④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금회 모집호수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예비자		
			전용	공용	계	기타공용	주차장					
26	26A	49	26.19	14.3914	40.5814	3.7242	23.2133	67.5189	20	60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개별난방	'25.10 (예정)
	26B	60	26.23	14.4134	40.6434	3.7300	23.2487	67.6221				
	26C	20	26.14	14.3639	40.5039	3.7172	23.1690	67.3901				
26(주거약자)	26D	5	26.23	14.4134	40.6434	3.7300	23.2487	67.6221	1	2		
37	37A	147	37.57	20.6447	58.2147	5.3426	33.2999	96.8572	328	140		
	37B	114	37.30	20.4964	57.7964	5.3042	33.0606	96.1612				
	37C	30	37.75	20.7436	58.4936	5.3682	33.4594	97.3212				
	37D	55	37.87	20.8096	58.6796	5.3853	33.5658	97.6307				
37(복층형)	37E	16	37.80	20.7711	58.5711	5.3753	33.5037	97.4501	21	10		
	37F	6	37.30	20.4964	57.7964	5.3042	33.0606	96.1612				
37(주거약자)	37G	5	37.75	20.7436	58.4936	5.3682	33.4594	97.3212	5	2		
46	46A	49	46.18	25.3759	71.5559	6.5669	40.9313	119.0541	161	70		
	46B	54	46.30	25.4419	71.7419	6.5840	41.0377	119.3636				
	46D	16	46.45	25.5243	71.9743	6.6054	41.1706	119.7503				
	46E	49	46.18	25.3759	71.5559	6.5669	40.9313	119.0541				
46(주거약자)	46C	26	46.30	25.4419	71.7419	6.5840	41.0377	119.3636	26	15		

【청약 및 입주 관련】

-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24. 06.) 후 '24. 12월 현재 미계약되어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당첨자와 향후 미임대주택 발생 시 계약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이번 공고에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는 20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4. 12. 0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및 자산·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공고에 첨부된 팸플릿 등을 통하여 형별 평면도, 발코니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세대의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으로 당첨자 발표일 전에 미임대주택의 수가 변동될 경우에는, 이번에 모집하는 **당첨자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관련】

- 26A, 26B, 26C는 26, 37A, 37B, 37C, 37D는 37, 37E, 37F는 37(복층), 46A, 46B, 46D, 46E는 46으로 타입 구분 없이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형은 추후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37(복층형)은 세대내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침실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며, 당첨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청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팸플릿 참조)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예시]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두 단지에 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이 더 빠른 단지, 청약접수일까지 같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상실됩니다.
-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관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26	12,361,000	618,000	11,743,000	172,200	(+) 17,000,000	29,361,000	73,030
26(주거약자)					(-) 7,000,000	5,361,000	192,610
37	24,192,000	1,209,000	22,983,000	247,500	(+) 25,000,000	49,192,000	101,660
37(복층형)					(-) 17,000,000	7,192,000	297,080
37(주거약자)	38,684,000	1,934,000	36,750,000	335,330	(+) 34,000,000	72,684,000	136,990
46					(-) 28,000,000	10,684,000	416,990
46(주거약자)							

【임대료 관련】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전환보증금[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 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조건으로, 향후 이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후 입주시작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37형을 신청한 경우 : 기본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24,192,000원, 기본 월임대료 247,500원에서
 - (증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25,000,000원을 추가납부하여 임대보증금을 49,192,000원까지 높이면 월임대료는 101,660원으로 내려갑니다.
 - (감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17,000,000원만큼 감액하여 임대보증금을 7,192,000원까지 낮추면 월임대료는 297,080원으로 올라갑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 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관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1959.12.09. 이전 출생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70%	80%	90%	
1인		2,438,075	2,786,371	3,134,668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2인		3,790,998	4,332,570	4,874,141	
3인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6,142,550	7,020,057	7,897,564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6인		6,694,297	7,650,626	8,606,954	
7인		7,246,045	8,281,194	9,316,344	
8인		7,797,793	8,911,763	10,025,7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이상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공고문 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준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단위 : 만원)				
	출산자녀 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0인(기준)	34,500		3,708	
	1인(+10%p)	38,000		4,079	
2인(+20%p)	41,400		4,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3. 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시에도 동일)



1) 순위(거주지)

순 위	기 준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0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5.12.10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p>⑥ 사회취약계층</p> <p>*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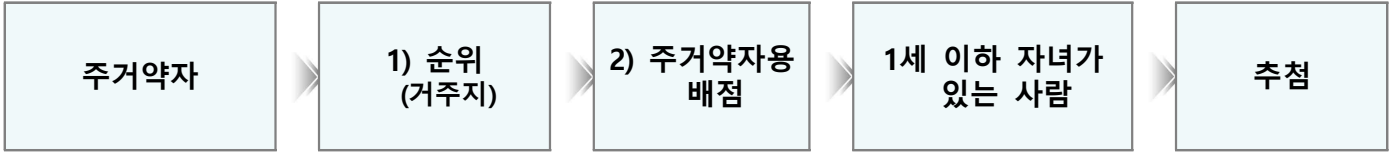
<p>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p> <p>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p> <p>*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p> <p>*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p> <p>*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p> <p>※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p>	
---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시에도 동일)



1) 순위(거주지)

순 위	기 준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0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4. 공급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청약 (인터넷, 모바일 또는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모바일 청약 포함) '24.12.19(목) 10:00 ~ '24.12.23(월) 17:00 ■ 방문 청약 '24.12.23(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가능 (기간 내 청약사항 변경 가능) • 방문 청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 대상)	'25.01.06(월)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임대주택』 → 왼쪽 아래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오른쪽 상단 목록 클릭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심사서류 제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PC· 모바일)제출 '25.01.10(금) ~ 01.16(목) ■ 등기우편 제출 '25.01.10(금) ~ 01.16(목) * '25. 01. 16(목) 소인분까지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PC· 모바일)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오른쪽 상단 목록 클릭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등기우편 제출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5블록 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25.04.03(목)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에서 확인 • ARS : 1661-7700
↓		
계약체결 (인터넷, 모바일 또는 방문)	'25.04.14(월) 10:00 ~ '25.04.16(수) 17:00 * 개별 안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청약신청은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이름 : LH 청약플러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내에만 청약 신청내용의 변경 · 수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청약하신 분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 전체의 소득 · 자산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을 위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정보회신 시점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LH 청약플러스 내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공고일 기준 신청 순위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관련】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5.01.06(월)]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5.01.10(금)~01.16(목)]에 필요서류를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
 - 주소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5블록 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임대주택』 → 왼쪽 아래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오른쪽 상단 목록 클릭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및 배점,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방법 및 서류제출 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님께서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12.23(월)에 방문(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하여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PC 또는 모바일)

■ PC

■ 청약방법

① 공동인증서 준비 → ② LH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청약신청

① 공동인증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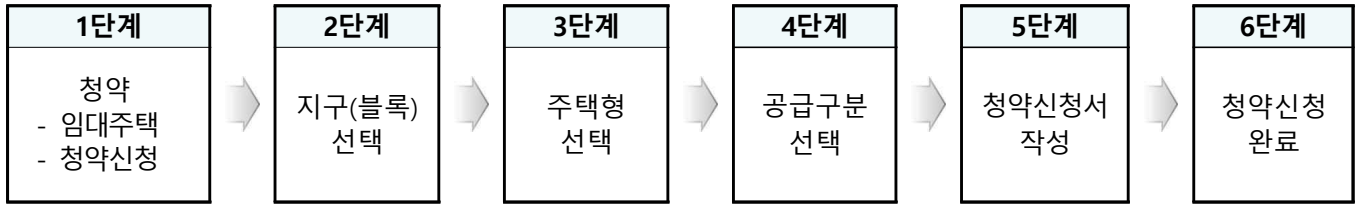
-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시는 고객께서는 청약신청 전까지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LH 청약플러스에 해당 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터넷 banking 용도의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 경로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청약신청



■ 기타사항

- 고객님의 청약신청하실 때 사용할 PC에서 실제 인터넷 청약신청하기 1 ~ 2일 전에 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고객님의 청약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완료 후 고객님의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은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청약신청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또는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청약방법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②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준비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청약신청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②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에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청약신청(모든 화면이 PC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기타사항

- 모바일 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등으로 모바일 청약이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으로 이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와 모바일 간 청약신청의 수정 ·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PC로 청약신청한 건에 대해 모바일로 수정 · 취소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청약신청한 건에 대해 PC로 수정 ·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사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LH 청약플러스' 어플로 당첨자 확인 및 계약내역 조회, 잔금 납부내역 조회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 청약

※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급적 온라인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만65세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아래 장소에서 고객님의 청약을 도와드립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미지참 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세부안내

일 자	'24. 12. 23(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 소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약 도	
필요서류	□ p.17 ~ p.21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방문시 해당 서류 지참 요망)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4. 12. 09(월))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기간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123456-7888888(O), 123456-7***** (X)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돌려드리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관련】

구 분	내 용
대상자 발표	'25. 01. 06(월) 17:00 이후 - 대상자 조회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제출기간	'25. 01. 10(금) 10:00 ~ 01. 16(목) 17:00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25.01.1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인터넷(PC·모바일) 제출방법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오른쪽 상단 목록 클릭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5블록 담당자 앞
제출서류 범위	아래 1) + 2) + 3)에 해당하는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양식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2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양식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4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행정복지센터
대 상 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울산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거나, 단독세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자 • (발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는 자 • (발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p><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p>< 해당자만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p>	<p>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p>	<p>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p>
<p>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p>	<p>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청약통장1면 사본</p>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방보훈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시 유의사항(PC·모바일)】

- **(접속방법)** 온라인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어플(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어플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경우는 서류 접수가 불가합니다.
 - ※ LH청약플러스 어플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25.01.14.)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본,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 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어플)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5. 4. 3.(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① 청약 → ② 청약 결과 확인 → ③ 당첨 / 낙찰 결과 조회
ARS 확인방법	① 1661-7700 → ② 1번 당첨자 조회 → ③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④ 당첨 여부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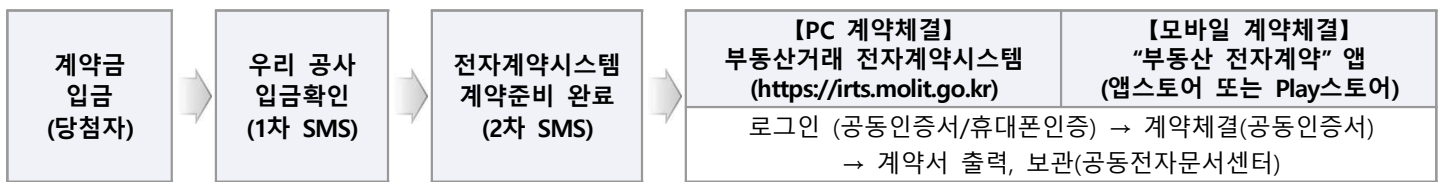
조회방법	① 청약 → ② 고객센터 → ③ 나의정보 → ④ 예비입주자 순위
-------------	-------------------------------------

계약 안내 [계약기간 : '25. 04. 14.(월) 10:00 ~ 04. 16.(수) 17:00]

-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첨자 지위는 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일정 및 방문계약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첨자(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관련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 접수 시 “SMS 수신동의” 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방문계약】 추후 개별 통보 예정

구 분	내 용
1) 기본서류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 단,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계약자 도장(단, 본인 방문 시에는 서명 가능)
2) 추가서류 (대리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기본서류 일체 -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 배우자 외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기본서류 일체 - 아래 ①, ② 중 하나 선택하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감증명 방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② 자필서명 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3) 추가서류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및 신분증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 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총자산은 아래 식과 같이 산정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 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구 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금액	<p>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내 용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내역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구 분		항 목	내 용	자료 출처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총자산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 정보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 · 범선 ·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구 분	항 목	내 용	자료 출처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 정보

8.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 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천장형)	욕실출입구 주위 천장에 설치	
	세대단말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과 장애인 편의 증진시설의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LH 울산사업단 주택품질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시 안내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의)증 환자 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9.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조건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7%(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68 385 1485 672">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td> <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p>당첨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센터-예비입주자 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p>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 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입주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단지내 시설이용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p>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우리카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p>지구 및 단지 여건</p>	<p>■ 지구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72호, 2022.11.30)로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해당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500m 이내 다운중, 다전초, 다운고 위치하고 있으며, 2km 이내 다운초, 제일중, 중앙고, 문수고 위치, 5km 이내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울산교육청 10km 이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위치 - 사업대상지 5km 이내 울산-부산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다운~구영간 도로, 국도24호선 위치 - 5km 이내 울산시청, 울주군청 3km 이내 백화점, 대형마트, 울산혁신지구 위치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 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본 단지(A-5BL)은 국민임대로 계획되어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지구외 연결도로(3개소)의 경우 사업추진 중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기와 개통시기가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외 도로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대규모 산업단지와 이격되어 있음
- 근린공원1,2호 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일부 원형보전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공원 내 방재시설인 저류지가 중복 결정되어 설치 예정임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보도) 간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자세한 노선은 관할 지자체(울산시 교통과)에서 결정합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울산다운2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인근으로 울산다운2 A-6BL 아파트가 위치해 있음
- 단지 인근에 경관·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도로를 경계로 C-1BL 민간분양 아파트가 위치 할 예정(날짜 미정)
- 단지 북측(501동)으로 단독주택 부지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위치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지하2층 ~ 지상25층(일부 지상5층) 규모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
- 지하주차장 주차 기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667세대로 세대당 0.95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기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쓰레기 분리수거함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한 전용수거용기만 제공됨
- 본 단지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로 인근 지구외 산지 유입수 처리를 위한 집수정 등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필로티, 지하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휴게공간 등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501동 지하 1층에는 사회적 기업, 근린생활시설 및 창업지원교육센터가 위치할 예정
- 504동 지하 1층에는 주민운동시설(운동기구 미설치), 주민카페가 위치할 예정
- 507동 지하 1층에는 작은도서관, 보육지원센터 위치할 예정
- 508동 지하 1층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및 방과후 교실, 키즈카페가 위치할 예정
-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일부동 전체와 일부세대는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경량벽체 시공으로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유형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각동측벽 및 주변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진출입시 경보음 발생과 단지 내 외곽 도로 등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층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미관저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505동, 507동 2개 동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그 외의 동에 설치되는 승강기와 제조사가 다르며, 승강기 디자인 및 성능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501동, 503동, 505동, 507동, 509동 승강기는 기계실 있는 승강기로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502동, 504동, 506동, 508동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승강기로 최상층 승강기 출입구 측면에는 제어반이 설치되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하2층 주차장에 과금형 콘센트 20개(3개 구역에 분산설치 예정), 지하1층 주차장에 급속충전기(1CH) 1대, 완속충전기(2CH) 1대, 완속충전기(1CH) 1대, 과금형 콘센트 3개가 설치될 예정임
- 508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는 501동 주변 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단,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01동, 505동, 507동, 509동 옥상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됨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상층 및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505동, 507동, 509동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일부 세대에서 인근동 옥상층 및 옥탑층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설비, 이동통신중계기, 공청안테나 등이 보일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보안등 불빛으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의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501동, 507동, 509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통신품질 여건에 따라 설치동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505동 옥탑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와 TV공시청 안테나 1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어린이놀이터-2(507동 옆), 경로당 내부에는 미세먼지안내표시기가 설치될 예정임
-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휴대폰에 원패스시스템(LITE) 등록 시 공동현관 출입문 자동개방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서비스가 제공됨
- 비디오폰 단말기(7inch 칼라)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연동) 및 단지공용 기본서비스(공동현관기 연동, 원격검침시스템 연동,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연동,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제공됨
- 주거약자 세대(26㎡D, 37㎡G, 46㎡C 타입)의 비상통화는 비디오폰을 활용하며, 비상연락장치(26㎡D-욕실 / 37㎡G-욕실 및 침실 / 46㎡C-욕실 및 침실1, 침실2), 자석감지기(현관 출입문), 동작감지기(26㎡D-거실/침실 / 37㎡G-거실 / 46㎡C-거실)가 각 1개씩 설치되어 일정기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경비실 등에 비디오폰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통보됨
- 주차장 진·출입시 경광등 경보음 발생과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기타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시설, 이동통신 안테나 등이 시공됨
- 무인택배보관함은 501동 경비실(501,2,3동 사용), 504동 지하1층(504,5동 사용), 506동 지하1층(506,7,8,9동 사용)에 설치될 예정임
- 501동, 503동, 505동, 507동, 509동은 비상탈출용 공기안전매트의 설치 공간확보를 위해서 조경수의 규격이 제한받을 수 있음
- 지하층 승강기 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되며, 장비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승강기 내부,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출입구, 각 동 출입구, 각 동 옥상 출입구, 무인택배보관함, 지하주차장, 생활자원보관소, 관리사무소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차압감지관 마감 캡이 설치됨

- 인동거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일부 동의 경우,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울산광역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동별로 분산 설치되며, 일부 동 전,후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 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임. 단, 공사 진행 중 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색상, 모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해당품목 : 일반가구(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싱크대), 창호류(합성수지창, 목재문), 조명기구, CCTV 등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내역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마감재 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거실 및 주방 등의 천정에 각종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재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람
- 세대내부 경량벽체 시공으로 액자, 시계등 벽체 거치물에 설치시 구조를 확인하고 설치바랍니다.
- 세대내 목재문, 가구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유형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함.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당 아파트는 세탁기가 위치가 화장실에 위치하며 다소 협소함에 세탁기 반입 시 세탁기 설치 공간과 화장실 문 크기를 고려 해야함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실외기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홍통 설치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수전이 설치되며 동파방지를 위해 동절기에는 루버를 반드시 폐쇄하여야 함.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관리소 등을 통한 미확인이나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은 UBR(조립식) 적용으로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음.
- 세대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현관입구 벽면 인근에 설치됨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 성능 등급은 예비인증 내용과 본인증시 달라질 수 있음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p> <table border="1"> <tr><td>건물명</td><td>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1, 신정2차</td></tr> <tr><td>건축주</td><td>신정2차주택조합</td></tr> <tr><td>건축면적</td><td>2022년 11월 11일</td></tr> <tr><td>주소</td><td>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1, 신정2차</td></tr> <tr><td>층수</td><td>지하 2층, 지상 25층 / 지하 2층</td></tr> <tr><td>연면적</td><td>28,943.00㎡</td></tr> <tr><td>건축용도</td><td>주택용</td></tr> <tr><td>실내면적</td><td>26,923.28㎡</td></tr> <tr><td>규격</td><td>지하 2층, 지상 4+25층 (9개동)</td></tr> <tr><td>세대수</td><td>701 세대</td></tr> <tr><td>공공예정분</td><td>0022-12-31</td></tr> </table> <p>인증 등급</p> <p>인증등급: 일반등급(인증준비)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기준</p> <p>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평가범위] 종합등급 W G C</p> <table border="1"> <tr><td>녹색인증 필요요소</td><td>91%</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요인</td><td>98%</td></tr> <tr><td>재료 및 자원</td><td>75%</td></tr> <tr><td>물환경관리</td><td>28%</td></tr> <tr><td>공기질관리</td><td>98%</td></tr> <tr><td>생태환경</td><td>19%</td></tr> <tr><td>실내환경</td><td>95%</td></tr> </table> <p>2020년 9월 11일</p> <p>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건물명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1, 신정2차	건축주	신정2차주택조합	건축면적	2022년 11월 11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1, 신정2차	층수	지하 2층, 지상 25층 / 지하 2층	연면적	28,943.00㎡	건축용도	주택용	실내면적	26,923.28㎡	규격	지하 2층, 지상 4+25층 (9개동)	세대수	701 세대	공공예정분	0022-12-31	녹색인증 필요요소	91%	에너지 및 환경요인	98%	재료 및 자원	75%	물환경관리	28%	공기질관리	98%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95%	 <p>공동주택 성능등급 평가결과</p> <p>건축물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명: 울산다동2 A-5B1 공동주택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다동동, 울주교 명석동 세서리, 경곡리, 달림 대지면적: 28,943.00㎡ 건축면적: 6,458.54㎡ 연면적: 68,435.12㎡ 주거부분 면적: 26,923.28㎡ 규격: 지하 2층, 지상 4+25층 (9개동) 세대수: 701 세대 공공예정분: 0022-12-31 <p>산청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너지주택공사 <p>에너지인증등급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무령 제6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3호, 2019. 3. 13.)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무령부 고시 제2018-87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에 의해 건축 부가용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전 설계 도서에 근거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예비인증등급 평가 <p>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결과 [연간 단위 면적당]</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평가결과</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 요구량 (kWh/m²)</td> <td>75.5</td> </tr> <tr> <td>에너지 소비량 (kWh/m²)</td> <td>155.9</td> </tr> <tr> <td>1차 에너지 소비량 (kWh/m²)</td> <td>576.8</td> </tr> <tr> <td>등급산출용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²)</td> <td>131.3</td> </tr> <tr> <td>CO₂ 발생량 (kgCO₂/m²)</td> <td>31.8</td> </tr> <tr> <td>평가등급</td> <td>1등급</td> </tr> </tbody> </table>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1)없지만 (4)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이 건물은 환기설비가 (1)없지만 (1)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p>	구분	평가결과	에너지 요구량 (kWh/m ²)	75.5	에너지 소비량 (kWh/m ²)	155.9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576.8	등급산출용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131.3	CO ₂ 발생량 (kgCO ₂ /m ²)	31.8	평가등급	1등급
건물명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1, 신정2차																																																		
건축주	신정2차주택조합																																																		
건축면적	2022년 11월 11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1, 신정2차																																																		
층수	지하 2층, 지상 25층 / 지하 2층																																																		
연면적	28,943.00㎡																																																		
건축용도	주택용																																																		
실내면적	26,923.28㎡																																																		
규격	지하 2층, 지상 4+25층 (9개동)																																																		
세대수	701 세대																																																		
공공예정분	0022-12-31																																																		
녹색인증 필요요소	91%																																																		
에너지 및 환경요인	98%																																																		
재료 및 자원	75%																																																		
물환경관리	28%																																																		
공기질관리	98%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95%																																																		
구분	평가결과																																																		
에너지 요구량 (kWh/m ²)	75.5																																																		
에너지 소비량 (kWh/m ²)	155.9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576.8																																																		
등급산출용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131.3																																																		
CO ₂ 발생량 (kgCO ₂ /m ²)	31.8																																																		
평가등급	1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X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X 지역난방지구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5BL	한국토지주택공사	쌍용건설(주) 외 2 (주)통해 외1 (주)온브랜딩 외1 (주)오성방재 외1		건원엔지니어링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래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

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패·부조리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09.



부산울산지역본부